의정활동보고서

제307회 임시회(2019. 3. 12 ~ 3. 25)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봄이 시작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기간 중 울릉도를 찾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규탄과 독도 영유권 수호를 강력히 주장하고 농촌지도자 경북연합회와의 현안 간담회,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등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현장 소통 데이'에 함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민생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 탈락, SK하이닉스 유치 무산 등 우리 도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 경북은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적극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우리 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솟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도정의 최고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온 힘을 쏟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살맛나는 행복한 경북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맞이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발생이 우려됩니다. 공사현장, 다중이용시설, 노후건축물, 저수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아울러 봄이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5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첫 시작하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관심사항들이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되고 도민의 여망이 반영되는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무척 어렵습니다만, 새봄을 맞아 땅이 녹고 새싹이 자라나듯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차 례

Ⅰ. 개 황 ····· 9

Ⅱ. 의사일정 ····· 10

Ⅲ. 의안처리 ····· 16

Ⅳ. 민원처리 ····· 17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9

Ⅵ. 5분 자유발언 ····· 22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22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25

□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 29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32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35

Ⅶ.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38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38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47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76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 105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148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162

부 록

□ 조 례 안(10건) ····· 179

□ 동 의 안(2건) ····· 241

□ 결 의 안(1건) ····· 249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는 2019년 3월 12일 13시 4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25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7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12일(화) 13시 40분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세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수) 14시에 개의하여 어제에 이어 세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월) 11시에 개의하여 다섯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제시된 정책적 제안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2019년 4월 25일 14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8년 3월 12일(화) 13:4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9년 3월 12일 ~ 3월 25일(1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99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9	1	2	1	-	1	1	1	-	2
누 계	517	42	66	64	53	48	49	55	71	69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2(화) 13:40 (제1차)	▢ 안건처리 ○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 13(수) 14:00 (제2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3. 25(월) 11:00 (제3차)	▢ 5분 자유발언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5(월) 11:00 (제3차)	○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2(화) 16:50 (제1차)	▢ 안건처리 ○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10:00 (제1차)	▢ 안건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상북도개발공사, (재)대구경북연구원 소관) ○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북통상주식회사 소관)	
3. 14(목) 10:00 (제2차)	▢ 안건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 주요업무보고의 건((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 주요업무보고의 건((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 주요업무보고의 건((재)경북신용보증재산 소관) ○ 주요업무보고의 건((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 주요업무보고의 건((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10: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4(목) 11:1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16:4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수) 16: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5(월) 10:00 (제4차)	▢ 안건처리 ○ 포항 지열발전소 촉발지진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보고의 건 ○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2(화) 16:50 (제4차)	▢ 안건처리 ○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Ⅲ. 의안처리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07회) 의회 누계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중 ©	비고
				계 ⓐ	가결		부결	폐안			
					원안	수정					
계		19 (187)	19 (187)	19 (187)	17 (170)	2 (16)	0 (1)	0 (0)	0 (0)	0 (0)	
조례안	소 계	10 (86)	10 (86)	10 (86)	9 (76)	1 (10)	0 (0)	0 (0)	0 (0)	0 (0)	
	의회 제안	7 (48)	7 (48)	7 (48)	6 (44)	1 (4)					
	도지사 제출	3 (27)	3 (27)	3 (27)	3 (21)	(6)					
	교육감 제출	0 (11)	0 (11)	0 (11)	(11)						
규칙안		0 (1)	0 (1)	0 (1)	(1)						
예산·결산		0 (8)	0 (8)	0 (8)	(4)	(4)					
동의·승인		2 (26)	2 (26)	2 (26)	1 (23)	1 (2)	(1)				
건의안		0 (1)	0 (1)	0 (1)	(1)						
결의안		3 (22)	3 (22)	3 (22)	3 (22)						
기타안		4 (43)	4 (43)	4 (43)	4 (43)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23)	(7)			(5)	(1)	(1)	1 (5)	(1)	1 (3)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1)			
행 정 보건복지	1 (5)	(4)								1 (1)
문 화 환 경	1 (5)							1 (5)		
농수산	(6)	(3)							(1)	(2)
건 설 소 방	(5)				(5)					
교 육	(1)					(1)				
특 별 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21)	1 (21)				2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4)	(4)				1
문화환경	(4)	(4)				1
농 수 산	1 (6)	1 (6)				
건설소방	(5)	(5)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19건(조례안 10, 결의안 3, 동의안 2, 기타안 4)

2. 처리 의안 : 19건

○ 가결 의안 : 17건(조례안 9, 결의안 3, 동의안 1, 기타안 4)

○ 수정 의안 : 2건(조례안 1, 동의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10건(원안가결 9, 수정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19. 2. 28.	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	박용선 의원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	〃	도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5	〃	김명호 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6	〃	김희수 의원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7	〃	김하수 의원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	박차양 의원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9	〃	도지사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	윤승오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 결 의 안 : 3건

연번	접수일	제 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9.3.12.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장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19.3.25.	지진대책특별 위원장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19.3.25.	의회운영 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동 의 안 : 2건(원안가결 1, 수정가결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9.2.28.	도지사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2	'19.2.27.	교육감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가결

○ 기 타 안 : 4건(원안가결 4)

연번	접수일	제출자	안 건 명	비고
1	'19.3.12.	의회운영 위원장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 가결
2	〃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	〃	휴회의 건	〃
4	'19.3.25.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10건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163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4.15.	
2	제4164호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	
3	제4165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제4166호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5	제4167호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6	제4168호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7	제4169호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제4170호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9	제4171호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제4172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019.4.11.	

Ⅵ. 5분 자유발언

□ 2019년 3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설립 관련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제공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공립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는 1996년 12월 5개 학과 360명으로 도립전문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후 다섯 차례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12개 학과에 학생 정원은 955명이며, 지금까지 졸업생 수는 6,8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15년 교육부의 학교기업 지원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등 지난 23년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꾸준하게 성장·발전해 왔습니다.

한편 경북도립대학교의 부지 및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예천본교와 영주 실습동을 합쳐 3만 3,553평에 29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숙사는 창조관 등 3개관 147호실에 564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성실관의 일부를 제외한 137호실에 544명이 4인 1실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은 지 20년이 된 남자기숙사 창조관은 1인당 면적이 4.86㎡로 매우 협소하여 실내학습이 어렵고 생활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타 대학교 기숙사는 1인 1실이나 2인 1실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도립대학교 등 도립대학교에서도 2인 1실로 기숙사 생활환경을 개선하였거나 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때마침 경상북도에서도 2018년 11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학교의 열악한 기숙환경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기숙사는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균형 잡힌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쾌적한 기숙사 환경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져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입생 유치 등 도립대학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예천군의 지역인사와 출향민들은 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학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교수와 교직원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내년 말까지 기숙사를 완공하려면 당장 오는 4월에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합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백년대계의 산실이 될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 대학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지방 198호선 국지도 승격 관련 ≫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인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화～영양～영덕 구간 116㎞인 지방도 918호선은 이미 2010년 경북도가 국토부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하였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양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성장촉진 지역이며, 낙후도가 매우 심한 지역활성화 지역입니다.

지방도 918호선 국지도 승격은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교통오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철우 지사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의 악순환이 이어져 봉화·영양·영덕·청송군 등은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 상위 10위에 모두 포함되어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도 918호선이 경유하는 구간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국지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로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대상인 경북 북부지역은 국가와 경북도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만 인식되어왔을 뿐 대부분의 사업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SOC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한 채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북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방도 918호선이 국지도로 승격되면 낙후된 우리 경북북부 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등 지역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

≪ 2020도쿄하계올림픽 전지훈련장 경북유치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들을 위한 전지훈련장을 경북도 내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17일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는 경상북도에 분명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시차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가까운 거리, 사계절 뚜렷한 대한민국의 날씨와 기후, 도쿄에 비해 저렴한 물가, 방사능 오염이 전무한 안전한 대한민국, 세계 수준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경북 실업팀 등 세계 각국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에게 최적의 환경과 시설을 갖춘 전지훈련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서 도내의 우수시설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국내 20여 개 곳의 지자체들은 외국 대표팀에게 전지훈련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이 나타내듯이 많은 외국 관광객 메가 이벤트 수혜는 이번에도 시·도에 다양한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결과 도쿄올림픽 하계 경기종목 33개 중 전지훈련장으로 유치 가능 종목은 경상북도 도내에 17개에서 21개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 절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상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최적의 훈련장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체육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전지훈련장 규모를 약 3, 4천 명, 6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문화관광공사와 해외지사, 경북체육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별 관련 기관과 여행사 대상으로 올림픽 전지훈련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타 시·도는 이미 유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는 경제적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만을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올림픽 전지

훈련 유치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북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경북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장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 교통, 숙박, 훈련 파트너, 통역 등의 제반 시설을 하나 된 도민의 힘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2020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함께 우수시설을 활용하여 도쿄올림픽 참가선수 전지훈련장 유치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화선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경주 맥스터 추가설립 관련 ≫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인 맥스터 확충의 필요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에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중수로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포함해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24기 원자력발전소 25%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삶의 터전을 내주고 원자력발전소를 수용하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의 경주 유치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유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2018년 6월 15일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의 최종 처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면서 2016년까지 경주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경주의 원자력 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장소인 캐니스터가 이미 포화에 이르렀고, 맥스터 또한 95%를 넘어 내년에는 포화가 될 상황임에도 건립에 2년이 걸리는 맥스터 추가 건설은 아직 결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지역 일자리 감소라는 지역 경기침체의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에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발전량에 따라 책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설비용량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위험요소를 지역주민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 위험을 감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발전량이 아닌 설비용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전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위원회와 별도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가로 저장시설을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건식 저장시설이 포화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운영 중단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보관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세

부과는 사용 후 핵연료 최종 처리방식의 결정을 촉구하는 제재 수단이 됨과 동시에 임시 보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주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고성산 둘레길 지원촉구 관련 ≫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여가 선용과 건강 등을 위한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로 걷는 길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걷는 길 사업은 '올레길', '둘레길' 등으로 불리며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체적인 관광기능과 병행하여 길과 사람, 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과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도 역사, 문화 및 자연경관 등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자원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 퇴계 오솔길, 경주·포항 등 동해안의 해파랑길, 영주 소백산 자락길, 영양·봉화 등을 잇는 외씨버선길, 영덕 블루로드,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길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의 시·군마다 특색 있는 스토리를 엮어 관광객 및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둘레길 조성을 위해 경북도의회에서 지난 2016년 12월,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걷는 길 조성 위주의 개발 정책과 지역 간 경쟁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걷는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천 고성산은 소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백두대간 줄기로서 추풍령과 황악산, 덕대산과 이어져 있습니다. 시가지와 가까이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갈 수 있어 김천시민과 경북도민들의 휴식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올해 19개 시·군에 균특 46억 원과 도비 14억 원, 시·군비 32억 원 등 총사업비 9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산림생태, 문화, 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 및 둘레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김천 시내의 중심 산인 고성산 둘레길이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전·관리하는 친환경적인 숲길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북도민과

김천시민의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민 모두가 둘레길에서 새로운 삶과 여유를 찾고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둘레길 조성 사업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Ⅶ.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2019년 3월 1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채아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 경북의 실업률이 4.1%로 전국 실업률 3.8%보다 높고,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약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의 땀인 세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이란 올바른 도정 실현을 위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이 2018년에는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또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의 청년 실업률은 약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전기, 철강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실업과 농촌인구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비 약 22억 6,000만 원과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4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하는 청년에게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3개팀 10명, 2018년 53개팀 93명을 선발하였고, 2018년 10월 문경시에서 공식 1호점이 개업하였습니다. 비슷한 창업지원사업으로 2015년에는 국비 100%로 전통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2016년에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에, 2017년에는 문경 중앙시장과 안동 중앙신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2015년에 경산 꿈바우시장, 경주 중앙시장, 구미 봉황

시장, 2016년에는 안동 중앙신시장과 영주 신영주번개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청년폐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연령대와 창업 비용이 낮아지고 준비기간이 짧아지는 등 손쉬운 창업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100만여 명이 폐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2017년 9월과 10월에 개장한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의 40개 점포 중 24개 청년 점포가 문을 닫았고, 2015년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27개 점포 중 19개가 폐업했습니다.
특히 경산 하양 꿈바우시장의 경우에는 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폐업을 했고 단지 2개 점포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취업과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빚을 떠안고 폐업하게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8년 자영업 대출자 중 채무불이행자는 2만 8,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와 20대로 젊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템 없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의존해 음식업 등 소액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청년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소식 뒤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을 청년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업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창업지원이 종료되면서 폐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산을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이 청년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북이 마련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또한 폐업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현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와 체납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3.3%로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전북, 경남,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북이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86억 원, 11%가 증가하였고, 2017년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체납액은 경북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8월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38세금기동대'를 만들고 17년 동안 약 7,0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3년 광역체납기동팀을 조직해 시·군의 체납 부과 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또한 고의적인 고소득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올바른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경상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북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성실한 다수의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의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독도재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1919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을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부당한 국권침탈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독도침탈이 대한제국 국권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일본이 지난 잘못에 대한 사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민족정기의 중심인 우리 경북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독도지킴이 민간재단으로 독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우리 땅 독도를 표기하고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북도민이 독도재단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매년 독도재단에 약 30억 원의 예산과 함께 독도재단 사무총장에게 공무원 3급 상당의 지위와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재단의 특혜성 직원 채용과 불투명한 계약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고, 독도재단은 도내 26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독도재단의 업무실적이 매우 미흡했고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상북도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독도재단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과 역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새로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도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인사청문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경북의 초등 교원부족 사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교원이 좋은 교육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초등학교 시절에 애정을 가진 스승의 한마디는 어린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교원 확충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초등학교 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여전히 정원에 비해 50명의 신임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임용 지역가산점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탈이 줄어들어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50세 이상 교원 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 20.1%보다 높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경북의 교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북에 초등 교원이 부족한 주요 요인이 시·군을 넘나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교육환경 또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학교통폐합기금의 집행률이 25.7%에 불과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선 학교의 노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위한 사택도 열악합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된 사택이 전체의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 부엌, 방의 다섯평 크기 단독주택이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이전에 건축된 목조건물과 함석지붕의 블록 건물이 사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범이나 보안이 아니라 오히려 난방과 안정성이 걱정됩니다.

지역인재 선발 또한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구교대가 기존 6명이던 지역인재 선발을 2019년에 80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 1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가 반드시 경북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감 추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원들이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교사가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이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년 되풀이되는 초등학교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편안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정,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1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전하고 있는 경상북도 관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 이철우 지사께서도 취임과 동시에 경북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변경하시고 새롭게 경북문화관광을 준비하시며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지사 시대에 경북 관광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의원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해서 상징적인 분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앞길만 보고 달렸으나 비수도권, 특히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절감하시고, 또 이철우 지사님과 권영진 시장님께서 상생 협력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방문지에 많은 한국 관광객이 있었는데, 60~70% 정도가 한국분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경북 관광지에서 관광을 즐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의 입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20%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 방문객은 경상북도를 2.6%밖에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경북 관광이 현재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도에는 산사, 고택, 수려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동안 저희들의 관광 정책이 인프라 중심의 공급자형의 관광 정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관문공항이 대구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 중에서 대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보면 중국 관광객들 중에는 FIT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 속에서 올해는 뭐든지 해 보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의원

그런 원인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얼마 전에 여행사를 하는 분하고 잠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분 의견은 경상북도의 관광이 너무,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자산, 문화재에 너무 치중해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 또 우리 경북 자본보다도 특별히 여행사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관광객이 올 때는, 여행사에서 수도권 또 부산으로 많이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한류문화가 외국에 관광

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그런 상품을 많이 팔고 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영화 소재로 인한 영화촬영지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로, 또 부산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 관광도, 예를 들면 한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관광인들은 신라문화·유교문화·선비문화 등 유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최고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일단 먼저 말씀하신 외국 관광객들이 수도권에도 오고 부산에도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개별 여행상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북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명칭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와 시·군, 우리 도, 그리고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1박 2일, 2박 3일, 4박 5일, 아니면 일주일을 경북도에서 살아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상품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같이 팸투어를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여행지라든가 드라마 촬영지,

오늘 아침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우리 도내에 보면 '미스터 션샤인' 같은 그런 우수한 드라마가 문경새재, 안동, 예천 초간정,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 모두가 경북관광 홍보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SNS라든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퍼 날라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내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눈을 맞추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체험 관광, 과거에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여야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북관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경북관광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관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박창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관광 통계 관련해서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화관광체육부 관광객 실태조사

- 내국인 관광객

경기(1,653만명), 서울(1,426만명), 강원도(1,217만명), 충남(1,006만명), **경북(915만명)**

- 외국인 관광객

서울(78.8%), 경기(15.6%), 부산(15.6%), 제주(10.8%), 인천(10.0%), 강원(6.8%), **경북(2.6%)**

저것은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관광객 실태조사입니다. 경상북도 내국인 관광이 91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경상북도가 2.6%에 불과합니다. 저게 혹시 신뢰가 가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저것이 우리 국내에, 정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 실태조사가 사실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군 290개의 지점을 통해서 관광객 수를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부에서 중복 관광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외국인 관광인 경우에는 저것이 공항 기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공항, 부산 김해공항,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과소

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광의 특성과 실태를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실태 분석 조사용역을 우리가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또 KT라든가 SKT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용역을 가지고 3자를 종합해서 우리 경북의 실질적 관광객 실태조사와 함께 통계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잡은 통계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의원

국장님 설명에 다음 자료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다음 자료 한번 화면 주십시오.

다음 자료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2018년도는 외국인이 52만 1,00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국인은 5,239만 4,000명입니다.
아까 그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주요 관광지점(290개) 입장객 수

〈단위: 천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35,564	39,449	47,450	52,915
외국인	560	598	579	521
내국인	35,004	38,851	46,871	52,394

○ **박창석 의원**

경북 관광이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915만 명인데…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 **박창석 의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5,000만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차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에 우리 관광에 대한 목표를 잡은 것이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2,000만 명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 박창석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목표를 삼았습니까, 우리 자료를 해서 목표를 삼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한 숫자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관광객에 맞춰서 저희들이 담대한 목표를 잡았고요. 다만 이 통계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특성 실태평가 등에, 관광실태조사 분석을 대경연하고 하면서 보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해서 이것이 정부의 공인 통계로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통계의 미스매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창석 의원

기준이 없으면 미래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 박창석 의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자료를 잡다 보니까, 정부 자료를 가지고 인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 박창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자료에 900만 명인데 2,000만 명을 하겠다는 대단히 의욕 찬…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담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창석 의원

목표가 허상치가 안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창석 의원

다음 화면 한번 주십시오.

관광 유형 및 사례

주제	유형	사례
구경 가는 것	볼거리	불국사, 석굴암, 박물관 등
놀러 가는 것	즐길거리	전주한옥마을 보령머드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먹으러 가는 것	먹방	전라도음식 맛집탐방
쉬러 가는 것	머무르는 것 (휴양)	제주도
찍으러 가는 것	셀카	SNS

관광이… 저 화면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주민들이 관광을 '구경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놀러 가자' 그랬습니다. 또 '먹으러 가자' '쉬러 가자' 하는 관광이 지금 되돌아보면 '구경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에 해당될 것이고, '놀러 가자'하는 것은 즐길거리에 해당할 것이다. 그다음에 '먹으러 가자'하는 것은 최근의 관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먹방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북 관광의 위치가 어디냐로 봤을 때 구경 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박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사님께서 올해의 화두를 '환골탈태'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현장을 진짜 바꿔나가야 됩니다.

확 바꾸지 않으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보면 권역별로 있는 것 그냥 보여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경 가는 것도 VR과 AR을 도입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놀러 가서 즐기는 곳에서도 내가 거기 가서 정말로 힐링할 수 있고 뭔가 얻어 오고, 내 마음의 허한 곳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창석 의원

국장님, 전주 한옥마을에 혹시 가 보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다녀왔습니다.

○ 박창석 의원

제가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화면을 준비했는데, 전주 한옥마을 또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이런 데 가면 관광객이 거기 가서 즐기는 그런 관광 형태, 그런 데가 성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먹방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먹방이 대세입니다.
관광 중에서 먹방이 대세인데 그 먹방에 관광객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이라면 수도권 사람들의 경상도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썩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라도 음식이라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먹방 프로그램을 유치해야 된다. 또 음식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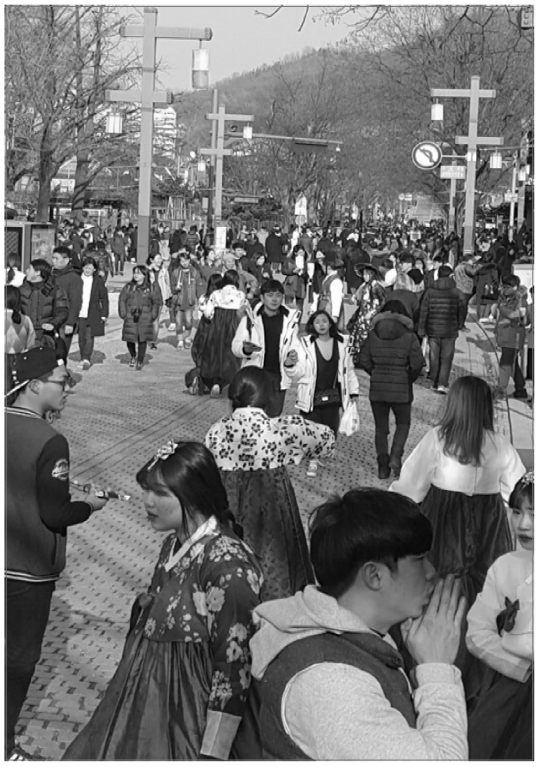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저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경상도 음식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경북의 음식은 매력이 있습니다. 얼큰하고 매우면서도 그 끝 맛은 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솔직하게 음식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은 부분은 없지 않은가 하는 반성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경북의 음식들을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먹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만 해도 사실 '맘모스제과'라든가, 제가 여기 제일 처음 와서 맘모스 제과를 갔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줄을 서서, 맘모스 제과에 있는 치즈빵을 사려고 줄을 선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SNS의 힘이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잘 수렴해서 SNS를 통한 먹방 프로그램, 1인 VJ를 통해서 하는 먹방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올해에 1인 VJ 양성프로그램이 20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 박창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이 물건을 판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찍으러 가는 셀카, SNS는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곧 홍보맨입니다. 그래서 셀카라든지 찍으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 앞의 화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화면은 전주 한옥마을 화면입니다.

저기도 전주 한옥마을 화면입니다. 저기에 보면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에서 줄 서서 음식을 즐깁니다.

저기 화면의 좀 뒤에 있는 부분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면도, 저 사람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저기에 가서 저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같은 복식을 입고 사진을,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고, 또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관광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은 3년 연속 1,000만 명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서 자료 좀 받아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듯 우리 현재 먹고 놀고 쉬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관광의 수입이 나옵니다.
구경하는 부분으로는 수입이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기에도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회마을에서 1년 1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보문단지에 700만 명,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회마을/보문관광단지/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추이

(단위: 명)

구분	관광객(방문객) 추이			
	2015	2016	2017	2018
하회마을	1,035,760	1,021,843	1,045,492	1,053,416
보문관광단지	6,596,508	5,890,312	6,450,576	7,099,158
전주한옥마을	-	10,648,000	11,097,033	10,539,700

※ 내외국인 관광객 포함(2018.12.31기준)

제가 왜 저 다음 화면을 만들어 봤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정말로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복식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장님.

복식체험 분류

경북의 정신	대표지역	복식형식
화랑문화	경주, 영천, 청도	화랑복식
유교문화	안동, 영주, 문경	양반/선비복식
호국유산	칠곡, 성주	군인복식(장교복식)
홍익인간	군위, 경주	단군복식(신라복식)
새마을정신	구미, 청도, 포항	새마을복식(근대복식)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 박창석 의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관광객이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혹시 울산에서 관광객 1,0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인센티브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센티브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도 간에 약간의 경쟁이 있어서 전세기가 들어올 때 주는 돈이 서로 좀 다르고 한데, 그렇게 돈을 주고 관광객을 데려오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머무는 그런 경북관광이 되어야 경북관광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박창석 의원

국장님 말씀 백번 이해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게를 오픈하면 미끼상품을 줍니다, 선물도 주고. 그것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관광이 뭐가 관광이냐, 사람이 관광입니다.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서 사람이 많다 하면 관광객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올해 목표가 1,000만에서 2,000만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올리려면 상당한 미끼상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박창석 의원

예, 우리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관광에 대해서 최우선 도정

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효자다.”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주십시오.

저것은 전기운반 수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대 문화권사업을 한번 둘러보려고 예천 삼강마을에 가서 삼강주막이 있는 데를 가 봤습니다.

그 강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힘들게 걷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뿐만도 아니고 또 영천 화랑 설화 마을에 가는 강변을 이렇게 잘 정비하면 좋겠다, 관광지가 되겠다, 상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삼국유사 가온누리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코스를 걸어 다니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전기차 내지는 인력거를 활용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어르신네들이 좀 관광하실 때에 저런 카트를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휴양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다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런데 그 관광지를 카트를 통해서 휙 타고 빨리 가 버리는, 그런 체류형 관광에는 다소 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석 의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다시 한번 되묻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 박창석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각종 단체 내지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여비가 많은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단체들이, 이미 선진지 견학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물으려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해외여비가 1년에 130억 이상 나갑니다. 경상북도 전체 내에서. 경상북도와 시·군을 합한 국외 여비가 130억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0만 명 안되는 관광객을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대단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진지 견학 단체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섬세하게, 가셔야 될 분들은 꼭 가셔야 되지만 중복갔다 오시거나 하는 분들을 섬세하게 살피셔서 이것을 국외여비로 하지 말고 국내여비로 돌리셔서 그 부분을 관광쿠폰으로 발행해서 우리 경북관광의 마중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짧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로 많이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해외 나가 있는 근로자까지 우리 고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 박창석 의원

다음은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북관광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를 쓰시는 것하고 성과를 이루는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관광에 대한 올해의,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는 일본에서 관광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 문화관광위원 할 때 우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일본은 한 800만이 채 안 된, 그래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도 했는데 그때가 2012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본이 3,119만 명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우리는 1,534만 명입니다. 딱 절반 수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1월에 오사카를 갔었습니다.

가니까 오사카가 넘쳐 납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3,119만 명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760만이 갔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가고 대부분 동남아에서 많이 갑니다. 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유럽·미국에서

다소 옵니다마는 그것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은 외국 관광객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서울·부산·제주를 찍고, 물론 서울에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기에 왔다 가고 다른 지방은 거의 다 해야, 다 보태도 15%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2.6%라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대구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숫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경주만 해도 50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에 가 보니까 공항 주변에는 전부 호텔 건립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사카는, 동경 다음에 오사카였는데 요코하마한테 밀려서 3등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돼서 있었는데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요코하마한테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붐이 많이 일어 나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자원은 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놀 거리가 있느냐, 즐길 거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공사를 만든 이유가, 관광을 하려면 문화가 겹쳐져야 됩니다.

와서 스토리텔링이돼야 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외국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이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음식먹는 식당을 대부분 입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식당주방도

일본에 가보면 대부분이, 우리는 주방이 안에 있는데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관광객이 보는 앞에 주방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우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꿔주는 사업을 문화관광공사를 해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50억, 시·군에서 50억, 100억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끼자금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도 하고. 또 우리끼리 즐기는 국내관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해서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내놓아라." 그래서 3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30개 대표축제에 시·군별로 버스 50대만 동원이 되어도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지를 유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 알리면, 유명한 관광지가 되면 그곳에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맛집도 생기고, 사람을 끌어오면, 사람이 모이면 음식점도 따라서 옵니다.
지금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음식이 거의 공통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식도 어느 특정 음식 외에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서울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나, 전주비빔밥이 서울에 가서나 대구에서나 똑같습니다. 대구의 따로국밥 어디에 가서도 똑같은 형태로 먹을 수 있고 안동찜닭도 어디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제 공통음식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여기 대부분 의원님들께서도 외국에 가서도 음식이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더 개발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 기업인들이 외국에 가서 기업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기업하는 분들이 연수를 하든 또 휴가를 하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박항서 축구감독이 축구 유소년단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조 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체육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28일 날 베트남에 박항서를 만나러 오늘 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오너라." 왜냐? 박항서 유소년단이 여기에서 캠프를 차렸다, 그게 베트남에 엄청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사람이 한국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서울·부산·제주는 이미 한번 찍었다. 그다음에 갈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데가 경상북도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같이 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의료관광, 중국에 의료관광을 할 사람 한 3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보고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대구에 와서 의학·의술·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경북에서

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외국관광객을 모시고 국내 관광객도, 목표가 2,0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방금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경주에 작년에 5,000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주 자체에. 이 통계가, 그러면 조금 전에도 "하회마을이 100만이고 보문단지가 700만이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통계를 발표하셨는데 그 통계가, 그러면 하회마을에 갔다가 경주에 가면 통계가 거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다 중복으로 나옵니다. 이분들이 가다가 대구에 들렀다 가면 대구도 통계가 나오고.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는…

○ 박창석 의원
지사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을,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마무리도 못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제가…

○ 박창석 의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 도지사 이철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의원
예.

○ 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가 지금 자원은 많고 볼거리는 있으나 이것을 끌어들이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든지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가 되도록 하는 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의원

하여튼 말씀대로 목표가 꼭 달성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무리로 아까 "음식은 전국이 다 똑같다." 하시는 말씀에 100%는 아니지만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인식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TV의 먹방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정말로 관광에 중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역의 관광이 관광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관광이 잘되면 농산물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경상북도의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데. 지사님, 그런 부분에 꼭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일본에 가서 성주 참외, 체류형 관광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의성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영덕 대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금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이런 것들도, 한류도 알려지지만 우리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시설, 호텔도 옳게 없습니다, 지금. 여관이나 이런 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본 같은데 가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상북도에 그런 인프라 준비하는데 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홍보, 홍보가 중요합니다. 왔는데, 올 수 있는 길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홍보하고 이런 데에 해서 어떻게든지 올해는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경상북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에 관광 관련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의원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해 주십시오. 저도 경상북도 관광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경제를 위해서, 경상북도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1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칠곡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 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유례없는 봄철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약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경북에 새바람 분다.'이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도 오시고 동분서주하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경상북도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시환 의원

제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주민들은 항상 “어렵다, 힘들다.” 참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잘나가던 구미공단은 지금 가동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희망인, 희망을 품게 했던 하이닉스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도지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왜 경북기업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빠져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유출되는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우선은 우리 경상북도가, 제가 도지사에 취임하고 느낀 점은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위해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가 자연감소,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아기가 태어나는 숫자가 돌아가시는 분보다 작년에 한 7,000명 적게 되었습니다.

○ 김시환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국 시·도 대학교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을까? 저는 원인을 다른 곳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첫째,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래에, 제가 최근 기사에, 매일경제 3월 8일 자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1,400조 시장 그냥 둘 것인가? 똑똑한 벤처 정부 합작할 때'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글로벌 산업시장 규모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2017년 통계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그 시장이 1,425조, 그리고 자동차가 600조,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시장이 세계에 45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했느냐, 우리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춤식 교육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지사님이 과거 10년 전 정무부지사로 일하며 계실 적에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업체 유치라든지 거기에서 많은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경상북도, 당신 지역에는 공항이 없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자동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

든지 이런 시장에, 우리가 구미라든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부품 이런 것은 대비는 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는, 여기에 대비를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못했다기보다는 수도권에 치중하는 이런 모든 정책이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준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공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오는데, 기업을 모아오는 데 힘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제가 부지사할 때 그때 삼성전자에서 3,000명 되는 연구소를 구미에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 김시환 의원

예.

○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설계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연구원을 뽑는 것을 못 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것이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만 됐어도 이미 구미는 지금과 다른 구미가 되어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게 왜 그때 사람들이 외국에서 안 왔느냐,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구미를 어떻게 가느냐?' 설명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얼마 전 일본 경제신문을 보니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삼성 반도체에 공이 큰 사사키를 보고 '당신은 국적이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사키는 초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의 기업의 '인'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도 아니고 단지 그분은 우리 인류를 생각했고 우리 인류의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무엇보다 지역 간의 갈등보다도 보다 큰 마음으로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시환 의원

그와 더불어 앞서 말한 글로벌 시장이 수천조 넘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경상북도를 볼 때는 아주 작지요.

그러나 바깥에서,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는 무한한 잠재력과 거기에 대한 지적 소양, 기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부수적인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 기회에 제가 공항에 대해서 한 말씀…

○ 김시환 의원

조금만요, 조금만.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시환 의원

왜 그런가 하면 특히나 국내총생산 부분도 우리 경상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경상도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인구 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제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시·도 단위 지역 GRDP’ 해서 우리 지역내총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의 축이 구미하고 포항입니다.

10개 시에서. 거기가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합니다.

그다음 한번 봅시다, 차트.

우리 군 단위에는 칠곡과 성주가 한 3,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느 쪽부터 먼저 경제적인 공략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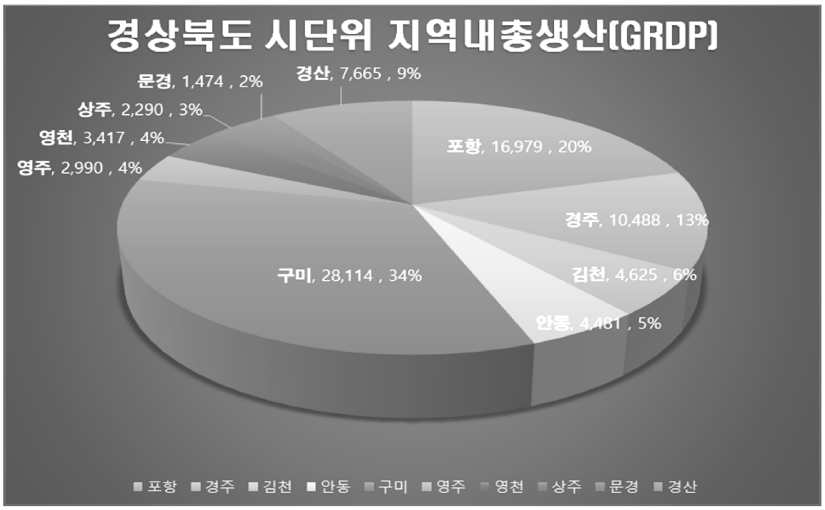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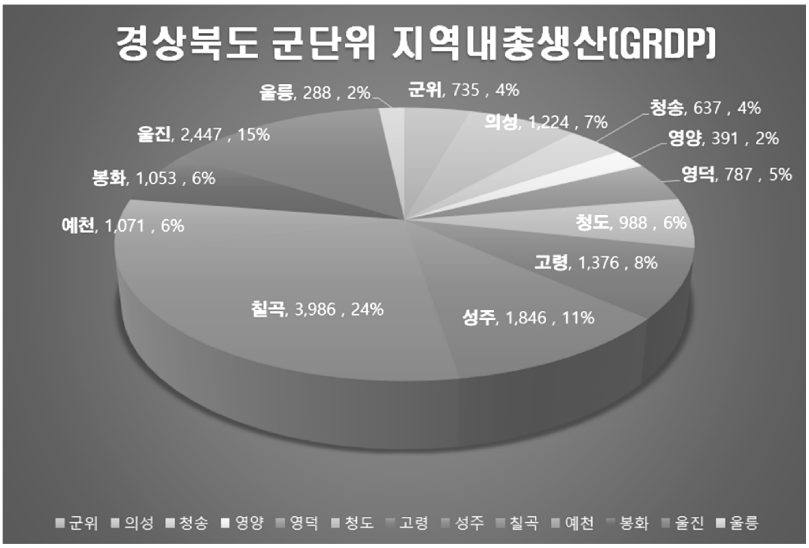

그리고 인구 면도 한번 봅시다, 화면. 인구 한번 띄워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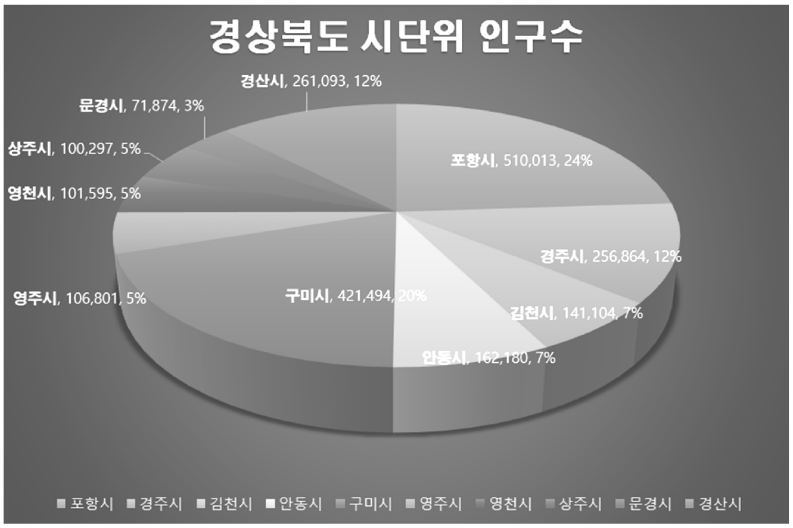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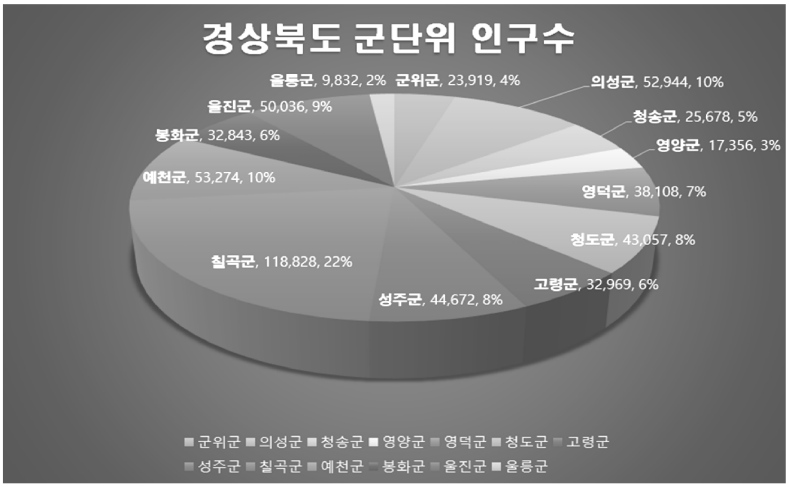

여기에서 구미시나 그 인근 인구가 거의 3·40%, 칠곡, 성주가 3·40%, 특히 경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왜 지금 우리가 경전철을 놔야 되는지, 이것은 경상북도에 필요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앞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께서 공항에 관심을 두시고 공항을 꼭 유치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대구공항을 통합신공항으로, 우리 군위·의성지역으로 옮기면 얼마만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그 정확한 통계를 잡은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연구원 보고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대충 계산해도 한 90조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공항을 이전하면 공항이 오는 지역이, 공항 건설하는 데만 최하 10조가 듭니다.
10조가 들면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으면 구미지역에 있는, 현가동률이 낮아진 그 공장들이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류공항이 되는 겁니다.
대구공항이 옛날에 통계를 낼 때 '200만 이상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2016년도입니다.
프랑스 파리공단에서 했을 때. 벌써 작년에 40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저가항공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박창석 의원님 말씀에 오사카를 이야기했는데 일본 공항도 대부분 저가항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항이 들어오면 1,000만 항공 수요가 생기고 물류공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구는 208만 평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대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구가 달라지고 경북은 천지개벽하고, 특히 군인이지만 군인들 1만 명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의성·군위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왈가왈부해서 서로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다시 가덕도 때문에 싸울 거냐. 그래서 우리 길을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빠른 것이 큰 걸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 문제입니다. 다시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민들과 대구시민들이 합심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고, 우리 경상북도 유사 이래 제일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철이라든지 KTX라든지 고속도로 연결망을 하면, 또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 결의도 해 주시고 많은 힘을 실어 주시는데, 특히 대구시민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 김시환 의원

말씀 도중 죄송한데 본 의원도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 경북이, 경북 혼자만이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항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엄청난 국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미주, 거의 60,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하고 통신 방법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큰 학술대회도 못 한다, 그렇지요?

또한 다보스포럼처럼 포럼도 못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공항이다. 이것 없이 안 되고, 또 공항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지선, 아까 좋은 얘기 했지만 관광이라든지 거기에서 모든 콘텐츠의 기본 베이스가 공항이다.

특히 우리 도지사님 칼럼을 보니까 그게 있습디다.

덴마크에 관한 한 소절이 있습디다. 덴마크는 우리 대구·경북 520만과 거의 비슷한 구조고, 그 또한 우리 도의 도농복합, 농업과 첨단산업이 저희하고 비슷합디다. 그런데 거기에는 1인당 소득이 6만 불입디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는 네슬레는 연간 100조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좀 전에 도지사님이 얘기하신, 가지고 있는 기본인프라, 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도지사님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공항은 경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0년대, '60년대에 인구도 1등이었고 생산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80년대에 산업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비중 있게 살아왔습니다. '90년, 2000년 들어서면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변방으로 처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있었지만 바닷길은 없었습니다. 항만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항을 바다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길을 만들어 내면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시가 되고, 대구·경북이 520만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나라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때보다 우리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예산이 그 당시의 한 2배됩니다, '80년 초까지 나라 전체 예산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남북한 시대가 열리면 공항은 필수적입니다. 북한에 관광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신의주나 금강산 이런 데 전부 공항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 특히 북한하고 열리면 러시아나 중국은 다 공항으로, 항공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 시간 내에, 적어도 한 시간 반 내에 승용차로 갈 수 있는 공항이 바로 우리 공항입니다.

지금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런 공항은 우리 공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공항이 9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이 반입니다, 그중에.
그래서 우리도 그걸 참고해서 우리 공항을 반드시 가지면 대구·경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시환 의원

우리 도지사님이 공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철학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소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한 나라,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아닌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이고 그 속에서 함께 가기 위한 어떠한 수단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크려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기에는 한반도인데 우리가 특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섬 속에서 우리 경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방금 전에 도지사님이 얘기했던 선비정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인류 평화정신을 구현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3차원 공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북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면서 세계평화의 공존 속에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말로만 '환골탈태'가 아니라 정말로 혁신해서, 우리 경상북도부터 혁신해서 새로운, 정말로 모두에 말했듯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항에 대한 철학입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고맙습니다.

○ 김시환 의원

감사합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시환 의원

얘기 더 할 것 있으십니까?

○ 도지사 이철우

공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갖고 해야 되고, 지금 중앙에서는 '동네공항 하나 만든다.' 이렇게 자꾸 폄하를 합니다.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입니다. 지방분권이 되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중앙에서 하는 그런 생각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동네공항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대구공항은 또 동네공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다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덕도 공항이, 김해공항이 아무리 커져도 미주노선, 유럽노선 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시환 의원

예, 맞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왜? 항공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주노선, 유럽노선을 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대구·경북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 김해공항이나 비슷한 공항이 됩니다. 우리도 1,000만 공항이 되고, 김해공항을 확장해 놓으면, 지금도 2,000만 가까이 되니까, 2,000만 넘으니까 거기에는 3,000만 이렇게 되더라도 가는 노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지금 대구공항보다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사고를 탈피해서 새로운 시대가, 특히 남북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공항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경북에서 통합신공항 만드는 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시환 의원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시환 의원

꼭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은 공항 만들어 내시고 거기에 기반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미 ~ 경산 간 도시철도 조속히 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시환 의원

근자에 보니까 계획은 2021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최근에 2023년으로 연기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대구역사가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개통된다 하는데 거기에 참조하셔서 꼭 공항 만들어 주시고 우리 경북도민, 남서부 쪽, 그리고 구미, 우리 칠곡, 경산까지 해서 광역전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시환 의원

다음 분은 우리 119와 도민과의 약속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 김시환 의원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대형 재난이라든지 기타 불,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최근의 재난 유형을 보면 아주 사소하게 시작해서 크게 확산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준비한 영상부터 띄워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2018년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3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많은 언론사에서 지적하셨죠, 그렇죠?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 김시환 의원

이러한 문제는 밀양 화재나 세월호 사고, 제천 사고에도 발생하여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역량을 불신케 만들었습니다.

또한 원인을 살펴보면 재난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 수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자 및 이송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계하는 것이 어렵고, 사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병원으로 분산하여 이송할 뿐만 아니라 이송 후에 병원에서 변화된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시환 의원

그러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현장에서 우리 중증 분류도를 함에 있어 분류표 재질에 문제가 좀 있죠?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증도 분류표는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구급대원들이 이 표를 통해서 중증도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때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류표의 재질이 종이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식별이 곤란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젖어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구급대원들의 주관에 의해서 분류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9일에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에서 사망자 3명을 비롯해서 9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날 공교롭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아지(Triage), 중증도 분류표가 다 젖어 가지고 환자의 식별이 곤란해지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 김시환 의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 밀양화재 사진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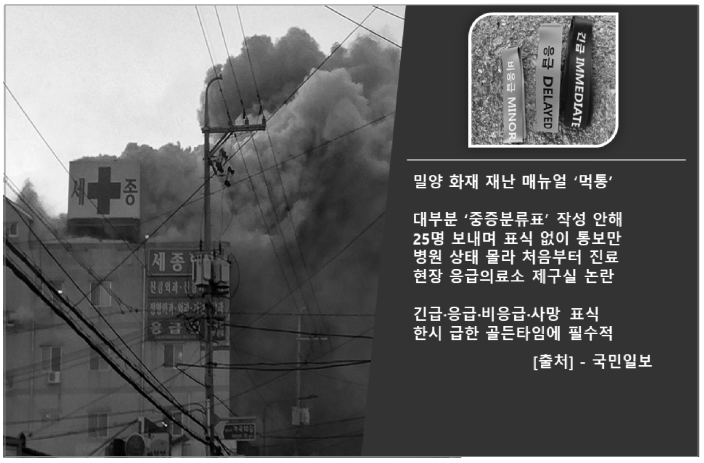

사망 검은색, 그리고 기타 해서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시 페이퍼 트리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 도중에 손상이 되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다음 화면 있습니까?

〈 세종병원 화재 사진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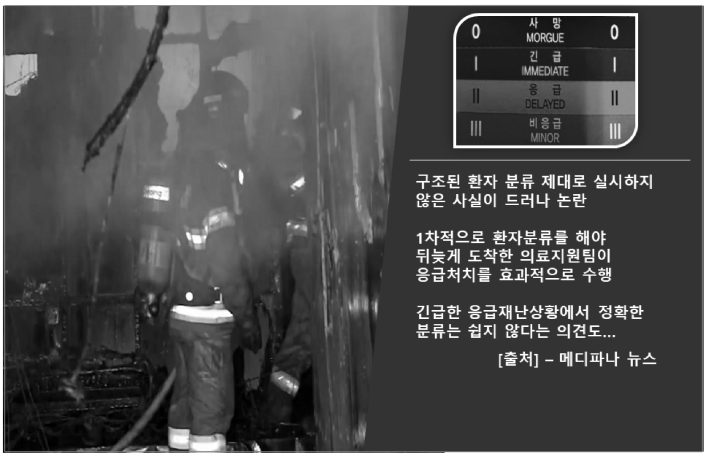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종병원 환자 중증도 분류 없이 이송하면서 이래서 이 또한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나. 즉 전자식, ‘e-트리아지’ 맞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e-트리아지라고…

○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창섭

e-트리아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환자를 분류함에 있어서 스마트 앱으로 구급대원들이 분류를 하고 그 태그에다가 정보를 넘기면 LTE 통신망을 타고 이 정보가 119상황실 및 지휘부로 이송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환자 집계가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현장대응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시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보다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e-트리아지나 또 거기에 필요한 전자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 김시환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사시에 소방대원이나 기타 위급한 시에 지휘본부하고도 서로 소통될 수 있고, 또한 같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일정시간 또 지휘본부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그렇죠?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원 안전관리시스템인데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추락을 하거나 붕괴에 의해서 고립되어서 운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동료가 발견하지 않으면 바로 현장에서 순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40초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본부 및 상황실에 뜹니다. 그렇게 되면 동료들이 바로 찾아 나서서 구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시환 의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창섭

충남에서는 현재 완전히 구축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시환 의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우리 경북에서도, 제가 네이버에서 봤습니다. e-트리아지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8일 자인가 언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8개 병원하고 MOU를 체결했던 것 같던데요?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현재 시스템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경북형 e-트리아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범실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 소방서 관내의 8개 응급의료기관의 병원장과 지난 금요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 3개 소방서는 시범실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시환 의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시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시스템이 어느 시·도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철우 도지사님 참고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시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육감님 새로운 교육, 이제 시작한 지가 8개월, 9개월 되었습니까?

○ 교육감 임종식

그렇습니다.

○ 김시환 의원

그 속에서 조직도 재정비하고요, 그렇죠? 또 새롭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앎과 지식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신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 교육감 임종식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시환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생존수영 해 가지고 여기에 챕터가 이것이,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우리 생존수영에 관한 것이 있더군요.

○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 김시환 의원

그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상은 2학년에서 6학년. 시간은 10시간이고, 2학년은 4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이 올해부터 의무화 되고 시행되고 있죠?

○ **교육감 임종식**

예,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시환 의원**

그래 생존수영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 **교육감 임종식**

예.

○ **김시환 의원**

그래 보면 과연 우리가 생존수영을 할 만큼 경상북도에 수영 시설이 되어 있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도내 실내수영장 현황 및 2019년 교육 인원

지역	수영장 개소	교육 인원	비고	지역	수영장 개소	교육 인원	비고
포항	5	22,693	지자체 2, 사설 3	청송	1	519	지자체 1
경주	7	9,748	지자체 1, 사설 4 대학 1, 원자력 1	영양	0	437	이동식수영장 활용 ※지자체 수영장 추진중 (2019년 착공)
김천	1	5,508	지자체 1	영덕	1	949	지자체 1
안동	3	7,231	지자체 2 안동대학 1	청도	1	910	지자체 1
구미	5	23,272	지자체 2, 사설 3	고령	1	957	지자체 1
영주	2	4,065	지자체 1, 사설 1	성주	1	1,000	지자체 1
영천	1	2,952	자자체 1	칠곡	1	5,834	지자체 1
상주	1	3,293	지자체 1	예천	1	1,077	지자체 1
문경	1	2,401	지자체 1	봉화	0	803	이동식수영장 활용 ※지자체 수영장 추진중 (2018년 착공)
경산	3	10,949	경북체고 1 지자체 1, 사설 1	울진	2	1,690	원자력 1 지자체 1
군위	1	410	지자체 1	울릉	0	240	간이수영장 2곳
의성	2	954	지자체 2	총계	41	107,892	*2018년 2학기 기준 인원

도내에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냐 하면, 토털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요.

○ 교육감 임종식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 대상자가 10만 7,892명입니다.

○ 김시환 의원

그렇죠?

○ 교육감 임종식

예.

○ 김시환 의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것이 우리 지역에는 학생 수가 근 6,000명 가까이 돼요. 참고로 제가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가 칠곡군 북삼 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감 임종식

예.

○ 김시환 의원

특히 석적읍이나 북삼읍은 학생 수가 거의 2,500명 이상 됩니다, 그것 아시지요?

○ 교육감 임종식

예.

○ 김시환 의원

그런데 칠곡군만 유일하게 한 군데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거기에 6,000명 되는 학생들을 연내 4시간, 10시간 수영 교육을 시킬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임종식

예, 칠곡에는 지자체에서 세운 수영장이 한 군데 있는데 새벽하고 오전, 야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오후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은 4시간이고, 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0시간입니다. 5일씩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보통 한 레인에 25명에서 30명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김시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수치적인 교육, 머리로 하는 교육은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실효성 있게… 없는 지역,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수영장, 교육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시·군 전체의 책임이다, 그렇지요?

○ 교육감 임종식

현재 수영장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60억에서 100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안동시의 청소년 수영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10억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부만 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더 건립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시환 의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공히 경상북도나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교육감 임종식

예, 공조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환 의원

자리하셔도 됩니다.

○ 교육감 임종식

예.

○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북이 앞으로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통합신공항과 서남부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았고,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소방의 현장대응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재밋거리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획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마우나 리조트 사고, 포항·경주 지진 등의 대형 재난을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 도는 재난현장대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앞서 가는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한발 앞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있어 수영이 일상생활의 건강복지에 필수항목이 된 만큼 주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체육복합시설 건립을 더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1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

지난 2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북 267만 1천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23개 시·군 중 대부분인 19개 시·군이 인구소멸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지난날 도 차원에서 추진했던 경북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도 사실상 무산되고, 환동해 항만의 물류거점으로 만들겠다던 영일만항 활성화나 경북 북부권 미래 농생명 산업벨트 조성사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대구까지 힘을 합해 구미 유치 운동을 전개했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결국 경기도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장·차관 인사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실·국장 등 핵심 보직에 이르기까지 경북인사는 배제되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배분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란 명목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에도 영일만 횡단대교와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홀대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사 불균형, 지역 불균형으로 경북의 홀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 일면에는 경북의 보수 이미지가 전국에서가장 뚜렷하다 보니 경북의 정치적 추동력을 상실하는 명분을 중앙정치와 정부에 주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해가 바뀔 때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도 공무원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서울지역 본부에 있는 우리지역 공무원조차 국회와 중앙정치를 이해하고 경험한 직원조차 없어서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 중 크고 작은 정책사업들을 구분해서 지역경제와 도민들에게 미칠 여파가 큰 사업들은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잘하면 큰 보상, 못하면 벌칙 같은 기업 경영식 도정 운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배제되고, 도민 불만은 극에 도달해 있는 와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뇌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원전해체 연구센터 유치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문제 등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 이재도 의원

그런데도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서 명시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들은 지방에 있는 공장과 인력을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이번 예타 면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북은 배제됐지요?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 이재도 의원

혹시 우리 실장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SK하이닉스의 우리 경북 구미시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러면 이번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관련해서 우리 경북 쪽에 지금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데, 간단하게 이 과정에서 우리 도가 어떤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번에 저희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가 되면, 사실은 구미 5공단 280만 평이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일관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를 만나서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런 과정은 답변서를 통해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이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지요?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운영하지요?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 이재도 의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투자유치실장님은, 거기 우리 서울사무소 하고 세종사무소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해당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기업을 찾아가고 이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기업이나 건실한 중소기업,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해외의 기업까지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기업유치의 장점을 직접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는 일상, 이 업무과정이 경상북도를 세일즈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 이재도 의원

그러면 최근에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어제 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님 허가를 득해서, 캐나다에서 우리 경북을 방문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경주시에 있는 기업하고 상담 어렌지를 미리 한 달 전부터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포항시에 가서 1개 기업, 경주시에 가서 2개 기업하고 상담을, 캐나다 잠재 투자기업을 안내를 해서 우리 국내 기업하고 상담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럼 거기에서 상담한 업체들하고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 캐나다 업체가 오늘, 내일까지 우리 국내업체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금요일…

○ 이재도 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다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듣겠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북이 예타라든지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를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타는 투자유치실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도 의원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경북이 광역시 중에서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어렵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래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실장님은 투자유치실장입니다, 투자유치실장. 국내기업이 투자유치를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지방에, 광역단위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런 업무를 꼭 그렇게 배제를 하지 마십시오.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 이재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중앙부처의, 답변서를 보면, 여러 중앙부처 내지는 청와대까지 관련된 사람들 다 해서 만나고 한 것은 타 지방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경북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웅도 경북'이라는 옛날 명성보다는 지금 많이 감소되고 우리 도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맞지요?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래서 저는 작년 예결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가 이제는 좀 탄력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애기를 했는데, 세종사무소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투자 유치 실장으로서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 이재도 의원

그 부분은 투자유치실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우리 실장님 위치 같으면 충분히 파악을 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국내기업이든지 국외든지 간에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많이 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경제부지사님 한번, 앞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이재도 의원

우리 부지사님.

○ 경제부지사 전우헌

경제부지사 전우헌입니다.

○ 이재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부지사님은 기업인 출신이지요?

○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 이재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런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에 관한 노하우는 누구보다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지 이런 굵직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으로 오는 이런 시설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우리 경제부지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경북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까?

○ 경제부지사 전우헌

SK하이닉스가 우리…

○ 이재도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경제부지사 전우헌

경북지역에 투자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깝게도 다른 지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SK하이닉스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타 다른 기업의 우리 경북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또 기업은 수익을 위한 기업활동이 가장 주목적이지요?

○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 이재도 의원

지금 지방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 살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남게, 풍족하게 살려면 기업 내부적인 활동도 중요하고 우리 도 자체의 활동도 중요하고, 수익이 그만큼 창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 이재도 의원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경제 관련한 소신이 있습니까?

○ 경제부지사 전우헌

우리 도지사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업을 위한 그런 경상북도가 되게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우리 부지사님, 제가 나중에 도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또 우리 경북권에 있는 시·군, 다 똑같이, 이런 우리 경북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똑같이 움직이면서 그 열정으로, 옛날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의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부지사 전우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를 해 주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기업 유치활동에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부지사님.

○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 이재도 의원

정치적인 행위, 이렇게 단체들끼리 모여서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와 닿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만 이렇게 그냥 한번 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꼭, 기업인 출신의 경제부지사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경제부지사 전우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 이재도 의원

예, 지난해 12월에 우리 제주 노선 운항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에어포항 아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2018년 2월 50인승 비행기 두 대로 김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노선운항을 시작해서 포항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이 서울과 제주를 다녀오는 데 큰 도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으로 인해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이 되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에어포항이 운항했던 10개월 동안 제주 노선 탑승률은 평균 81.5%입니다. 그리고 김포노선은 평균 54.2%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8만 756명의 승객이 이용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리고 포항공항은 2016년도만 6만 8,200명, 2017년도에는

45% 증가한 9만 8,000명, 2018년도에는 69% 증가한 6만 6,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항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항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10개월 동안 운항을 하고 에어포항이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러면 먼저 우리 지역공항이 재추진을 지금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는데 재추진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재추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 이재도 의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에어포항 자체가 베스트에어라인에 매각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포항하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지역항공사가 설립이 되면요.

○ 이재도 의원

지역항공사 설립은 기존에도 됐고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객 유치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그런 인력이든지 유치를 하려면 우리 포항시나 경북도가 갖고 있는 시·군 특성에 따라서 제반사항이나 정주여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마련해 놓고 기업유치를 하든지 거기에 따르는 후속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인정합니다.

○ 이재도 의원

인정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 이재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나 신항만, 또 포항에 있는 블루밸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업 유치에 많이, 또 우리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먼저 도로망, 접근성, 여러 가지 부분들 제반사항들을 먼저 해 놓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 오시고 우리 도내의 이슈 있는 지역에 현장방문 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지사님하고 현장간담회 할 때는 매번 가고요. 그러면서 공항 관련해서 일단 신공항이 최근 이슈가 돼서요, 군위하고 의성은…

○ 이재도 의원

현장방문 많이 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현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많이 좀 먼저 알아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 이재도 의원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행정부지사 윤종진입니다.

○ 이재도 의원

좀 전에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경북 도내에, 포항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북 도내의 기업유치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 행정부지사 윤종진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OC 등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농업 등을 통해서 저희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 이재도 의원

맞지요?

○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

○ 이재도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있는 상위법, 온갖 규제, 맞지 않는 규제, 이런 제반 행정, 이런 부분들을 먼저 풀어서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자리경제실하고요,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행정에 어찌 됐건 전문직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지역에 지금 맞지 않는 상위 이런 부분들 우리 법무 쪽하고 잘 파악해서, 규제를 풀어야 민간이 오든지 지자체가 하든지 간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꼭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 이재도 의원

지난 10대 의회 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로 제정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3년 2월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예, 그런데 '14년도에 단 한 차례만 경영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느닷없이 상위법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모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듬해 느닷없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것이 '느닷없이'가 아니고, 걱정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오다가, '12년도에 해 오다가 '14년도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 이재도 의원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거기에 따라서…

○ 이재도 의원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본 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서 온 것을 보면 답변서가 아주 무성의합니다. 왜?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아니고요.

○ 이재도 의원

안 되는데,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갑론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 지사님의 수십 년 동안의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현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출자·출연기관은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

○ **이재도 의원**

법 얘기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이 뒤에 보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여기하고 상위에 관련된 이 조례 다 있습니다, 지금.

[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결과에 따른 조치) ①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

1.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
2.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
3. 부진기관에 대한 경고조치 및 경영진단 실시
4.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5.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권고
6. 그 밖의 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도지사는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해서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를 권고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조치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3의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결과 공개)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도지사는 위원회의 경영평가에 대해 당해 기관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 PPT 지금 다, 그것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그냥 소위 말하면 '제 식구 감싸기'의 조례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한번…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 이재도 의원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 이재도 의원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도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출연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도민들의 발전과 행복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 이재도 의원
자, 그 이야기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의 답변서에 보면 경영평가 관련 벌칙조항, 그다음에 경영평가 개선 계획,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 내용들은 제 식구 감싸기 밖에 안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도 의원

이것이 여기 지금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영평가 개선 계획에 보면 '평가지표 : 윤리경영, 예산집행,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검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연봉 조정', 기관장 연봉 조정 매년마다 안 합니까? 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관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해서…

○ 이재도 의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해서 경영평가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들이…

○ 이재도 의원

한데 지금 여기에 최초에 해 놓은 경영평가와 그 평가에 따르는 벌칙조항, 내지는 구조조정, 내지는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준수는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도

얼마 전에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반드시 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실장님은 그런 말씀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고요, 저는 상위법에 임원이나…

○ 이재도 의원

상위법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해산할 수 있고요

.

○ 이재도 의원

왜 자꾸 상위법 말씀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상위법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뭐…

○ 이재도 의원

예? 지금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어제 우리 예결위에 오셔서 이번 추가경정 사항에 대해서 어제 그 사업 관련 예산 집행하는데 거기 설명 오셔서, 본 의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실장님 저희 도에 부임해 온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 전체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60분의 의원님들 개인 예산으로 2억씩 다 배정되고 해서 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말씀 들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이 '아,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현장의 민생예산인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 추경예산의 비율로 보면 그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하다는 이런 표현 안 하셨어요, 어제?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표현한 적 없고요.

○ 이재도 의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예? 어디서 그런 이야기합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 이재도 의원

표현을 한 적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계시는 모 의원님들이나,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앞으로는…

○ 이재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번 출자·출연기관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경북도민들, 그 소모적인 예산, 경북도민들 민생에 아직까지도 경북에는 골든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60%, 70%이고 상수도 제대로 시설 안 되고 마을상수도로 살아가시는 지역이 60~70%입니다. 그것들은 곧 민생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런 상황들을 아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이말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요, 소모적인 이런 출자·출연기관, 비현실적인 것 다 정리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이재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 이재도 의원

다음은 지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와 주십시오.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 이재도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 2년 차입니다, 맞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현장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는 그때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숱하게…

○ 이재도 의원

수도 없이 갔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 이재도 의원

예, 지금 도에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는 몇 번 갔습니까?

○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에 올라와서는 한 번 갔습니다.

○ 이재도 의원

거기 현장에 지금 한 200명의 주민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지요? 피해민이, 그렇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상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한 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 이재도 의원

200명이 있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 이재도 의원

이것이 우리 지금 포항시와 경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지진 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그 200명 되는 피해주민들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생활 하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우리 포항시와 경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북 현실이고 지금 현재 여기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우리 피해민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홀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홀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경북도와 시는 지진 일어난 이후의 매뉴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해보상, 접수처, 그다음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정해져 있지만 10일? 턱도 없지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10일 안에 그런 보상이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 이재도 의원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지진 관련법이 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런 지진 관련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 이재도 의원

사실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도나 시 차원의 지자체에서 어떠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얼마 전에 국가에서 한, 도내에 지진 관련 재난대비 안전 체험교육시설 했던 게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진 관련 전국의 안전체험시설은 8개가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8개입니까?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 이재도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까지 지진체험센터를 비롯해서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거기에 우리 경북도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진에 대해서는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안 되어 있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 이재도 의원

아니,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어디 어디에서 났습니까, 포항하고 경주에서 났지요?

○ 재난안전실장 최웅

의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 이재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압니다. 왜? 재난은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경주와 포항은 지진이 일어난 지가 3년 됐습니다, 3년.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 경북 현실입니다.

○ 재난안전실장 최웅

의원님, 그것은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매뉴얼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재도 의원

아니, 다른 지역도 아니고 국민안전체험관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유일하게 많이 일어나서 피해를 본 지역이 포항·경주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국민안전체험관을 국가에서 건립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앞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누락이, 전체 수요를 봐서는 누락이 되었고 앞으로 그것들은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고. 아까 매뉴얼 관계 말씀하신 것은…

○ 이재도 의원

제때 제때 하십시오.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매뉴얼 관계 말씀하신 것은…

○ 이재도 의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에 “미흡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은…

○ 이재도 의원

매뉴얼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매뉴얼대로 하면 무엇합니까? 보상이라는 기준이, 15년 전에 기준한 보상 그것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입니까?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것은 아마 받아들이는…

○ 이재도 의원

그것은 아닙니까, 실장님?

○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저희들도 누차 건의했습니다.

○ 이재도 의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포항·경주 또 특히 경북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국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잘 좀 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입니다.

○ 이재도 의원

존경하는 도지사님, 존경이라는 표현은 입에서 나오는 존경과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철우 지사님을 마음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감사합니다.

○ 이재도 의원

항상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항상 저는

마음에서 우리 지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경북이 참 많이 어렵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정말 힘듭니다.

○ 이재도 의원

너무 힘드신 그런 도정에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도 많고 다니실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공장총량제, 또 예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 지사님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어떻게 좀 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우선 도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경북만을 홀대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호남을 벤치마킹하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호남이 정권이 없을 때도 예산이나 모든 정책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천수답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좀 더 걱정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도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지사님의 마음을,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꼭 집행부가 혼자서 경북에 다 힘써야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60분의 도의회도 있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당연합니다, 의원님.

○ 이재도 의원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가서 어떠한 유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가시죠. 얼마든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 이재도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에, 생활하시는 데에 편리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 이재도 의원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사님, 출자·출연기관.

○ 도지사 이철우

예.

○ 이재도 의원

우리 지사님 전에 취임하시고 분명히 거론하셨습니다, 맞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이재도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맞지 않는 규제, 맞지 않는 도의 행정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철우

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기조실장이 한 이야기는 상위법에 징계제도가 되어 있는데…

○ 이재도 의원

예, 상위법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 도지사 이철우

그 징계제도를 활용한다, 이런 뜻인데 징계제도가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누군가는 그것을 조례를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도 의원

의회의 의원발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 도지사 이철우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좀 시간이 절약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도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이재도 의원

지진 관련해서도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북도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이재도 의원

요즘 가장 힘없는 사람이 백성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각 지역에 사는 우리 도민들 지금 생활 민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포항의 피해민들은 그 좁은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해당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경북도도 어떠한 우리 지사님의 통 큰 행정 한번 해 주시지요.

○ 도지사 이철우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포항시와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때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꼭 한번 하셔서 그런 피해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도 의원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 맞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이재도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도지사 이철우

감사합니다.

○ 이재도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 또 우리 경북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도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추구, 권익신장, 복리증진,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생활 민생의 첫 번째 도정으로 우리가 집행부·도의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사항 시간에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고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1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눈으로 보고 일자리로 느끼는 현실을 만들어 내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경북을 떠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역을 잘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뿐이라며 경북 7대 공약과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우리 경북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SOC 사업은 물론 국비확보, 대형 국책사업 등에 소외되며 정부의 '경북패싱' 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북도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경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경북공약 목록 〉

공약내용 (100대과제반영 및 예산)	세부과제
1.현장중심원전 안전대응강화 (5개 1조29백억)	1-1.원자력해체기술 연구센터 1-2.국립지진방재연구원 1-3.원자력 안전연구센터 1-4.방사선 융합기술원 설립 1-5.재해복구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2.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4개 1조3,200백억)	2-1.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2-2.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2-3.주민 참여형 부유식 해양풍력단지 조성 2-4.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3.미래 이동통신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4개52백억)	3-1. 5G 융합디바이스 테스트베드구축 3-2. 스마트기기 강소기업 육성 3-3. 산업용 홀로그램 융복합산업 육성 3-4. 경주 스마트시티 조성(미추진)
4.김천혁신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3개44백억)	4-1.첨단미래교통안전 혁신기지 구축 4-2.동물바이오산업 R&D단지조성(미추진) 4-3.국립 안전문화진흥원 설립
5.철강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3개 61백억)	5-1.고부가 경량신소재산업 육성 5-2철강산업 스마트화 지원 5-3.미래형 고부가 철강재개발 생태계 구축
6.영주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3개 6천억)	6-1.첨단베어링 제조기술 기반 구축 6-2.알루미늄 융복합부품 양산화 플랫폼 구축 6-3.베어링 알루미늄 국가산업단지 조성
7.전국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과일무료 간식 지원 (3개 1천억)	7-1.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광역 친환경 과일 가공센터 설립 지원(미추진) 7-3.중소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8.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1개 2천억)	8.노후주거지재생을 위한 지역정비형 공공임대주택건설 8-1. 케어힐링팜기반 경북형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9.SOC (도로·철도,산단)	9-1.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9-2.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9-3.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9-4.점촌~동대구 연결철도 9-5.생명그린 하이테크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미추진)
[공통] 대구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국가 첨단의료 허브로 조성	1.가속기기반 신약클러스터 조성 2.휴먼재활산업 육성 허브(미추진) 3.대한민국 한의신약 거점단지 조성
[추가제안] 전남·경북공동	[공동] 치매예방타운 조성(미추진)

〈 경북공약 목록 (조정) 〉

분야	공약명	세부사업명
8대공약, 3대 상생, 25개 세부사업, 추진실적 : 9개사업 3년간 839억원		
1	현장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4)	1-1.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1-2. 국제원자력안전 연구센터 건립
		1-3.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1-4. 방사선 융합기술원 설립
2	동해안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5)	2-1.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2-2. 해양에너지 특화 융복합단지 조성
		2-3. 해상풍력단지 조성
		2-4. 지능형 에너지자립기반단지 조성사업
		2-5. 전력빅데이타 기반 신산업 기반 조성
3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조성(3)	3-1. 5G 글로벌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3-2. 스마트기기 강소기업 육성
		3-3.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융복합산업 육성
4	김천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지원(2)	4-1.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4-2. 공공기관 2차 이전
5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지원(1)	5. 미래산업 대응형 고기능성 철강소재 클러스터 구축
6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2)	6-1.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6-2. 첨단베어링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
7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료 급·간식지원(1)	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8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단지 조성(1)	8.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대구 상생	대구-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4)	9-1. 스마트휴먼 재활사업 클러스터
		9-2. 가속기 기반 신약클러스터 조성
		9-3.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 기반시스템 구축
		9-4. 대한민국 한의신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대구상생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지원(1)	10.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전북상생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추진(1)	11.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경북지역 공약사업 현황과 중앙정부 협력 및 소통창구인 지역 출신 인사 부재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2017년 7월 19일 현 정부가 들어서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춘 세부과제 발굴을 추진하여 36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북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당시 36개 과제에서 실현가능성 높은 25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정책으로 일부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된 국정과제 대형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9개 사업 839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와 건의를 지속하고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 5조 원으로 추산되었던 사업 규모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선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일 언론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경북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를 맞았고 민선 7기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차관급 114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7개 부처 개각 명단에도 TK 출신은 1명도 없었습니다.

정부 인사에서 경북지역은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불균형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인데다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SOC 사업을 선정하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홀대를 받았습니다.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이전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지부진합니다. 정부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바람에 지방은 아사 위기에 내몰려 있으며, 기업 유치는 커녕 지역에 있던 대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와 직결되는 것은 인사입니다.

지역 출신 인사의 부재는 지역의 프로젝트나 예산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정책 등 지역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출신 인사 홀대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약화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어디에 소통할 데도 없어진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공 불모지였던 경북도는 지난 2017년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5월 영천에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보잉 항공전자 MRO 센터 준공, 2016년 6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준공, 더불어서 항공기업이 집중 배치될 150만㎡ 규모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에 2,220여억 원을 투입한다며 2017년을 항공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 영천에 들어서며 항공산업 육성의 출발을 알린 보잉의 항공전자 MRO 센터가 주요장비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영천에서 철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항공전자 MRO 센터를 기반으로 항공 전자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북도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 육성이 기반을 잡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잉이 철수하더라도 항공기 스마트 부품산업과 항공기 스마트 인테리어산업 등의 항공산업 육성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께서 기업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유치했던 기업이 떠나게 된 원인과 우리 도의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항공산업' 어떡해...핵심 인프라 수도권 뺏길 판

매일신문 배포 2018-10-29 16:26:27 | 수정 2018-10-29 18:15:42 | 면정보 1/ 1/ 14

영천시 녹전동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는 지난 8월 항공기 부품 시험평가장비 21종 29점을 모두 갖췄다. 민병곤 기자

지난 1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민수사업과 미래형 무인이동체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2030년까지 국가 항공우주산업을 연 2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국산 중형 민항기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AI, 민수시장 확대해 2030년까지 항공산업 20조원 달성

윤은식 기자 | eunsik80@seoulfn.com | 승인 2019.01.17 12:07 | 댓글 0

올해 지속 성장·내실경영 주력…미래형 무인이동체 사업 강화

김조원 KAI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9년 KAI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은식 기자)

자체개발 민수 완제기는 2026년부터 신규 개발을 시작하여 50 ~ 70석급으로 국내 150대, 해외 250대 등 400대 판매를 목표로 매출 규모는 12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및 도내 시·군과 대구가 협력을 본격화해야만 수도권, 그리고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 대도시권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지원과 배후시설 기능을 하는 공항복합도시가 조성되고, 항공산업과 공항 물류산업 등 새로운 핵심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확대에 따라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항공산업벨트 육성과 통합신공항 추진 등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천의 호국 역사는 임진왜란 육지전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인 영천성 수복전투와 6·25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반전의 계기가 된 영천전투로 대표되며, 육군3사관학교, 국립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대표적인 호국안보 도시입니다.

반면 6·25전쟁 이래 영천시에 자리 잡은 육군 제2탄약창은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대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1,914만㎡에 이릅니다. 군사시설로 인해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영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투자선도지구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첨단산업·물류중심 시설로 개발하고, 입주기업에는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천시에서는 방위산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적 인프라와 군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많은 이점을 갖고 있어 경북도는 영천을 중심으로 군수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천시와 경북도는 군수방위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군수방위산업 육성과 발전 방향, 군수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기피·혐오시설 사업에 대한 도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경상북도 기피·혐오시설 현황 〉

시설명	시설	비고
태양광발전소	16,124개소	허가현황
풍력발전소	72개소	허가현황
바이오매스발전소	9개소	허가현황
원자력발전소	12기	
분뇨처리시설	26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6개소	
하수처리시설(500톤이상)	70개소	
하수처리시설(500톤이하)	379개소	
생활폐기물매립시설	34개소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8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7개소	

태양광·풍력발전사업, 화장장, 가축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흔히 기피 혹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산자부나 환경부, 경북도에서 사업을 허가해 주었다며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제도 아래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님비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도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며, 행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분쟁으로 인한 일선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이해 충돌 조정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누구나 꺼리는 기피시설이지만 분명 우리 사회에 없어서도 안 되는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사업을 도에서 반대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역민을 참여시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치의 공유와 지역민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재생 발전시설의 경우처럼 지역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 주민 소유로 전환해 환경 희생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피·혐오시설 사업은 공익 목적의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환경 희생 지역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새바람 행복경북'으로 출발한 민선 7기가 두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약속을 이행하고 공정한 정책결정 과정으로 새로운 경북의 발전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3백만 도민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보다 잘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더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3월 1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은 통합 신공항 이전과 14조 원에 이르는 원전해체연구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구미를 비롯하여 경북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유치와 기업투자가 확산되어야만이 인구증가와 함께 경북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경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철도사업을 통해 구미와 경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사님은 국회의원 초선 시절 강연장소에서 '호박 한 바퀴, 콩 한 바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자료를 보면서 지사님은 '큰 호박 한 바퀴'이고, 본 의원은 '참깨 한 바퀴'라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남부내륙철도 노선 (정차역 표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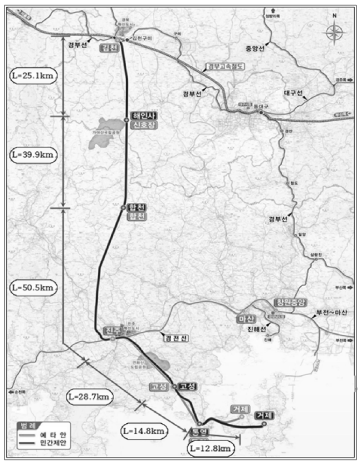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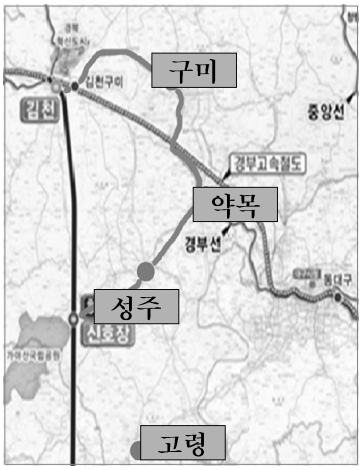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중부내륙권과 경북내륙 및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낙후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에 이르는 총 연장 173㎞, 4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와 약목을 거쳐 성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미는 1공단에서 4공단의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체 2,500여 개, 기계업종 1,050개, 전기·전자 720개, 석유화학 260개소 등 종사자 1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내륙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은 거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사들이 위치해 있고 61개의 조선기업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조선 산업과 구미의 기계와 전기·전자산업이 철도로 직접 연결된다면 각기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어 노선 수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는 50인 미만 공장 가동률이 38% 정도에 머무는 등 경제활동둔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의 조선산업과 구미의 전기·전자산업 간 상호 보완적이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를 거쳐 거제로 연결되는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주역사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계획을 보면 거제에서 김천까지 연결되지만 김천역 외에는 경북에 정차역이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이수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성주역사 신설을 촉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주역사 신설을 요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남과 경북의 발전의 기회입니다.
철도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북 서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정차할 수 있는 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약목~성주로 연결되어 경북서부권 발전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과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 사업이 조기 시행되어야 합니다.

〈 KTX 김천보수기지 연결 노선도 〉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 사업은 KTX가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총 연장 3.3㎞에 사업비는 2,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3만 구미시민과 구미에 입주한 4,800여 개 기업의 오랜 염원입니다.

구미는 지역 내 총생산이 2조 9,000여억 원으로 경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4800여 개 기업에 13만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1·2·3·4단지가 입주하고 있으며, 5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륙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경북에서 구미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구미의 발전이 경북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기반이 취약하고 KTX가 연결되지 않는 현실은 수도권과의 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기반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지만 KTX 구미 정차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은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이 경북 서부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내륙지역 최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구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조기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미 ~ 경산 간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대구권 광역철도 노선도 〉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 KTX 전용선이 완전 개통되어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대구와 경북도 내 도시 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는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총 62㎞, 2단계는 구미~김천 23㎞, 경산~청도~밀양을 연결하는 45㎞, 3단계는 대구~영천을 연결 하는 36㎞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1단계 구간인 구미~경산 구간 62㎞를 기존역인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역을 연결하고, 사곡역과 서대구역을 신설하며 향후 가천역, 왜관공단역, 원대역,

북삼역을 신설하는 등 2023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노반·역사 시공업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 5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이 관보에 게재 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대도시권의 범위 〉

권 역 별	범 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 구 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 주 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 전 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산~구미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구권의 범위는 대구시와 경북의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 경상남도 창녕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라면 종착역이 구미역입니다.

그러나 경북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 2단계 사업에 포함된 23㎞의 김천까지 연장하여 조기 완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여 구미대학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물론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 구미산단철도 (사곡 ~ 구미산단) 노선도 〉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할 경우 김천혁신도시의 공기업과 구미 산업단지 및 20여 개의 대학과 지식산업지구인 경산지역 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구미산업단지의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구미는 50인 미만 공장 가동률이 38% 정도에 머물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산 ~ 구미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련법 개정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봉곡역을 신설하여 종착역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곡역과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착공·완공해야 합니다.

구미산단철도는 광역철도 사곡역을 시작으로 지산동과 양포역을 연결하는 11㎞의 단선철도 건설과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2,800여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사전타당성조사 사업비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구미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공단에서 4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5공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단계 조성률이 99%에 달하고 있지만 '도레이 첨단소재'와 국내 중소기업 열 곳 정도로 전체분양률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미산단의 열악한 인프라는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사업이 용인시로 결정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완공할 경우 5국가산업단지의 1단계 분양과 2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구미산단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라 정차 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문화유적 및 관광지 현황 〉

시군	권역	문화유적 및 관광지
구미시	금오산권	구미시탄소재로교육관, 황산허위선생기념관, 구미시립민속관, **박정희 대통령생가,** 약상암, 도선굴, 대혜폭포, 금오랜드, 금오산성, 금오산 마애보살입상, 금오산 올레길, **금오산도립공원,** 채미정
	천생산권	**구미에코랜드,** 의우총, 산동참생태숲, 여헌기념관, 구미과학관, 인동향교, 인동입석, 해마루공원, 황상동마애여래입상, 천생산 산림욕장, 동락서원, 동락공원
	선산권	**신라불교초전지,** 문수사, 풀마실목장, **철새도래지,** 산악레포츠공원, 구미시승마장, 서울나들이길, 구미보, 금오서원, 대둔사, 수다사, 매학정, 선산향교, 일선리 문화재 마을, 오성자연휴양림,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낙산리 고분군, 도리사,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칠곡군		칠곡가산산성, 관호산성돌레길, **칠곡평화기념관,** 칠곡왜관철교,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칠곡보 생태공원, 숭정자연휴양림, 팔공테마리조트, 도개온천, 칠곡문화원, **구상문학관,** 지천수상스키장, 승마장, **칠곡양떼목장,** 칠곡나눔숲체험, **흙내음도예마을,** 신마무골성지,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선봉사, 도덕암, 대둔사, 금곡사, 영명사, 남포루, 낙화당, 요술고개, 화산서원, 곤산서원, 사양서당, 소양서당, 제2석굴암
김천시		**직지사,** 수도계곡, 청암사, 고방사, 길향사지석조여래좌상, 개령향교, 금릉은기리마애반가보살상, 연화지 봉황대, 종합스포츠타운, 교동연화지, **지산동벽화거리,** 김산향교, 김천율수재, 용화사, 김천옛날송씨마을, **샙띠마을체험,** 빗내농악전수관 체험, 경북수상레포츠, 김천모티길, 자두분양체험, 안산공원, 서낭댕이공원, 자산공원, 환경공원, 조각공원, 부항 해인리 숲체험길, **삼도봉 숲체험길,** 까치산 등산로, 황악산, 수도산, 고성산,

광역철도가 김천까지 이어질 경우 철도가 지나는 칠곡군과 구미시를 비롯하여 김천시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활용하는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 금오산, 신라불교초전지, 도리사, 구미에코랜드를 비롯하여 김천의 직지사, 지산동 벽화거리, 삼도봉 숲 체험길 등과 칠곡의 칠곡평화기념관, 구상문학관, 양떼목장 등 문화유적과 체험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건설과 함께 정차 역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세부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광역철도 정차 역에 인접한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연결한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권 광역철도 계획이 당초 기본계획보다 4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2018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2021년까지로 되었다가, 지난3월 5일 국토교통부의 관보에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경북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기완공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기간이 4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경상북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와 구미산단철도 건설은 경주와 안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경북 서부권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적과 1일 생활권의 체험관광 및 구미산업단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권 광역철도와 구미산단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 조기 완공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노인 인구는 53만 명으로 약 20%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어르신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을 통한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인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에 매우 인색합니다.

경북에는 54개소의 경로급식소, 6,500여 명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으며, 68개소 복지시설에서 2,100명의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녀야 하고 그나마도 급식소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은 무료급식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에 대한 무상급식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 고령화율 2위인 경북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만이라도 도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무상급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 중구에서는 매월 10만 원의 노인공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6.25전쟁의 마지막 보루에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새마을운동과 조국 근대화·산업화의 선봉에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지역입니다. 그 속에는 경북 어르신들의 노력과 피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 무상급식 카드를 발행하여 하루 한 끼 식사를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게 한다면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부담이 크다면 70세 이상어르신들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소방청사 현황 〉

구 분	계	도 유지 도 청사	도 유지 시.군청사	시·군 유지 도청사	시·군 유지 시·군청사	기 타 (국유 등)
총 계	210	74	4	91	36	5
(비율)	100%	35.24%	1.91%	43.33	17.14%	2.38%

경상북도에는 소방청사가 2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청사 중 도유지 소방청사는 78개소에 37.1%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유지에 소방청사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3조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서는 소방사무를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청사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에서는 시·군 소방청사건립이나 이전 설치 시 해당 시·군으로부터 부지를 무상제공 받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 계획에 있는 소방청사 총 13개소 중 11개소 부지는 무상사용, 2개소는 도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도 업무를 경상북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군 소방청사 부지매입 예산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남부내륙철도 및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과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 도입, 소방청사 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구미시의 발전과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어렵고 예산부담이 많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장래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10건) ····· 179

□ 동 의 안(2건) ····· 241

□ 결 의 안(1건) ····· 249

조 례 안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2. 28)

○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박용선 의원('19. 2. 28)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2. 28)

○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배진석 의원('19. 2. 28)

○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명호 의원('19. 2. 28)

○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김희수 의원('19. 2. 28)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하수 의원('19. 2. 28)

○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박차양 의원('19. 2. 28)

○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19. 2. 28)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윤승오 의원('19. 2. 2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으로,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도지사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도세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8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지방세기본법」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도지사는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3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도지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4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 ---------- ----------"시행규칙"------ ---------- ----------.
제4조(징수교부금의 교부)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제4조(징수교부금의 교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 ---------- ---------- ---------- ----------.
〈신 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도지사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도세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8조 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도지사는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신 설〉	**제13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도지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체납,「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완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 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5. “주차장 관리 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3.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4.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각 관리 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애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 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년 3월 13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맞지 않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안 제2조 3호의 내용 중 “주차환경개선지구”이란”을 “주차환경개선지구”란으로 문구를 수정함.

○ 안 제10조의 내용 중 “관리주체”를 “주차장 관리 주체”로 문구를 수정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3호의 내용 중 “주차환경개선지구”이란을 “주차환경개선지구”란으로 한다.

○ 안 제10조의 “관리주체”를 “주차장 관리 주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 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3. "주차환경개선지구"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5.(생략)	**제2조(정의)** ----------. 1.~2.(원안과 같음)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5.(원안과 같음)	조문내용 중 맞지 않은 문구를 수정
제10조(주차장 관리) 관리 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 주체는 ----------.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로 문구를 수정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중 "연가가산"을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연 7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6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3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 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 ------.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3월 이상 6월 미만</td><td>3일</td></tr><tr><td>6월 이상 1년 미만</td><td>6일</td></tr><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9일</td></tr><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2일</td></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4일</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일</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일</td></tr><tr><td>6년 이상</td><td>21</td></tr></table>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다.	

현 행	개 정 안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8조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7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연 2회 ----------.------ 제25조의2에 따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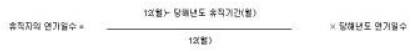 ③ ~ ④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 제〉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이상이 되어야 한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td></tr>
<tr><td>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d>구분</td><td>대상</td><td>일수</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5</td></tr></table></td><td>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d>구분</td><td>대상</td><td>일수</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10</td></tr></table></td></tr>
</table>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 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치단체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주지 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홍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5.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인력, 규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4. 교재·교구 개발 및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경비 지원과 정산 등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 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도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에의 접근성

5. 세대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도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와 권리)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2.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및 실무매뉴얼 개발·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를 준용하여 도지사가 구성한다.

④ 지원단은 주요사업의 심의·자문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상북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기업협의회의 운영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 개발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관련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재난안전산업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의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및 교육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박 예방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2. 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의 안 〓

○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19. 2. 27)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19. 2. 27)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 2019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건 5건	7,300 17,288.9	100,000 34,73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건	7,300	100,000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5건	17,288.9	34,73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면적)				
1	건물	구미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 밸리 내 (008-01-0001)	• 건축연면적 855	2,070,000	'20. 12.	• 상용화인증센터 및 설계 해석기술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 공개경쟁입찰	미래융합산업과 (신축)
		경산 4일반 산업단지 내 (산업10-2)	• 건축연면적 897.9	1,260,000			
2	토지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170-5번지	• 부지면적 7,300	100,000	'19. 9.	•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권 취득 • 수의계약	산림환경연구원 (신축)
	건물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170-5번지	• 건축연면적 3,194	2,500,000	'20. 12.	•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 공개경쟁입찰	
3	건물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16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3,894	9,100,000	'21. 12.	• 청송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 공개경쟁입찰	소방행정과 (신축)
4	건물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617-7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3,894	9,100,000	'21. 12.	•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 공개경쟁입찰	
5	건물	상주시 만산동 479-1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4,554	10,700,000	'21. 12.	• 상주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 공개경쟁입찰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계상재산

가. 취득 재산 : 11건(18,606㎡), 521억 1,515만 8천원

- 토지 3건(4,872㎡), 23억 182만 3천원
- 건물 8건(13,734㎡), 498억 1,333만 5천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	취득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면적(㎡)		
계		11건 토지 3건 건물 8건		4,872 13,734	52,115,158 2,301,823 49,813,335	
1	제2종합 안전체험관	토지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545-3 외 2필지	1,721	117,501	신축 부지 취득
		건물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543-3	3,840	18,706,496	신축 건물 취득
2	직원복지관	토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0	2,990	2,179,112	신축 부지 취득
		건물		1,986	5,683,048	신축 건물 취득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천원)	취득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면적(㎡)		
3	구정초	건물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41-1	1,563	4,894,207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4	장량초	건물	포항시 북구 장성동 441-3	1,783	5,326,812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5	인의초	건물	구미시 인의동 653	969	3,993,184	다목적강당 증축
6	경산서부초	건물	경산시 옥산동 736-1	969	2,942,453	다목적강당 증축
7	하주초	건물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107-2	1,944	6,126,351	교사동 증축
8	문경초	토지	문경시 문경읍 상리 526-4 외	161	5,210	다목적강당 증축 부지 취득
		건물	문경시 문경읍 상리 468	680	2,140,784	다목적강당 증축 건물 취득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3. 13.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재산 2건과 처분 재산 7건은 필요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중

- 경상북도교육청 직원 사택 취득의 건(건물 2,967㎡) 삭제
- 경북일고등학교 양궁장 취득의 건(토지 5,000㎡, 건물 420㎡) 삭제
- (구)동산초등학교(폐교) 처분의 건(토지 8,027㎡, 건물 987㎡, 입목죽 12주) 삭제
-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장(폐교) 처분의 건(토지 7,234㎡, 건물 979㎡, 입목죽 8주) 삭제
- (구)공검중학교(폐교) 처분의 건(토지 22,182㎡, 건물 1,816㎡, 공작물 18식, 입목죽 409주) 삭제
- (구)안계서부초등학교(폐교) 처분의 건(토지 8,689㎡, 건물 778㎡, 공작물 2식, 입목죽 6주) 삭제

-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장(폐교) 처분의 건(토지 21,384㎡, 건물 1,095㎡, 공작물 13식, 입목죽 84주) 삭제
- (구)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폐교) 처분의 건(토지 13,443㎡, 건물 975㎡, 공작물 10식, 입목죽 32주) 삭제
- (구)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장(폐교) 처분의 건(토지 6,671㎡, 건물 795㎡, 공작물 8식, 입목죽 3주) 삭제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재산

가. 취득 재산 : 11건(18,606㎡), 521억 1,515만 8천원

- 토지 3건(4,872㎡), 23억 182만 3천원
- 건물 8건(13,734㎡), 498억 1,333만 5천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	취득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토지 건물	11건 3건 8건	 4,872 13,734	52,115,158 2,301,823 49,813,335	
1	제2종합안전체험관	토지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545-3 외 2필지	1,721	117,501	신축 부지 취득
		건물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543-3	3,840	18,706,496	신축 건물 취득
2	직원복지관	토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0	2,990	2,179,112	신축 부지 취득
		건물		1,986	5,683,048	신축 건물 취득
3	구정초	건물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41-1	1,563	4,894,207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4	장량초	건물	포항시 북구 장성동 441-3	1,783	5,326,812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천원)	취득 사유
	기관명	구분	소재지	면적(㎡)		
5	인의초	건물	구미시 인의동 653	969	3,993,184	다목적강당 증축
6	경산서부초	건물	경산시 옥산동 736-1	969	2,942,453	다목적강당 증축
7	하주초	건물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107-2	1,944	6,126,351	교사동 증축
8	문경초	토지	문경시 문경읍 상리 526-4 외	161	5,210	다목적강당 증축 부지 취득
		건물	문경시 문경읍 상리 468	680	2,140,784	다목적강당 증축 건물 취득

〓 결 의 안 〓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2019. 3. 2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3월 25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9. 4. 25(목) 14:00(제1차 본회의)

• 2019. 5. 9(목) 11:00(제2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07회 임시회)

●

2019. 4. 인쇄 / 2019. 4.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07회 임시회)

●

2019. 4. 인쇄 / 2019. 4.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